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현 오 석

●대통령령 제2463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4란 앞에 0301란, 0301.9란 및 0301.9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길라(Anguilla)종]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을 초과하고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3		수입전량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chip)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주정용	10	12만5천 메트릭톤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90만 메트릭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2란 앞에 1001란, 1001.9란 및 10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	9	기타			
1001	99	기타			
		2. 제분용			
		나. 기타		1	100만 메트릭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3.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3	90	기타			
		1. 맥주보리		25	2만5천 메트릭톤
		2. 겉보리	사료용	0	5만 메트릭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5.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01만 메트릭톤 (사료용 900만 메트릭톤 및 버 섯재배용 1만 메트릭톤)
		2. 팜콘	가공용	1	125만 메트릭톤
		3. 기타	가공용	1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01란 앞에 1107란, 1107.10란 및 1107.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	10	볶지 않은 것	맥주 제조용	25	13만 메트릭톤
1107	20	볶은 것			
		1. 훈연(熏煙)한 것	맥주 제조용	25	
		2. 기타	맥주 제조용	25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214.90란 및 2308.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14	90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배일(bale)			
		1) 사료용		0	수입전량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86만 메트릭톤 (사료용 8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 메트릭톤)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 이스트(waste), 식물성 박 (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18.00란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702란 앞에 1701.9란, 1701.91란 및 1701.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701	99	기타		5	5만 메트릭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2란 앞에 2207란 및 220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5	8만 킬로리터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3.20란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8.00란 3. 목화씨껍질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309.90란의 세율(%)란 중 “2”를 “0”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란 앞에 2836.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36	20	탄산이나트륨	판유리제조용	1	수입전량
------	----	--------	--------	---	------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1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65만 메트릭톤
		2. 기타		3	수입전량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3901란 앞에 3105란 및 3105.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10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하며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인 것은 제외한다)	3	수입전량

별표 3의 관세율표번호란의 2903.39란 앞에 7202란, 7202.4란, 7202.41란 및 7202.4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전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0714.10란 제2호 건조한 것 가목 칩(chip) 주정용
2. 1001.99란 기타 제2호 제분용 나목 기타
3. 1003.90란 기타 제1호 맥주보리
4. 1005.90란 기타 제2호 팝콘 가공용 및 제3호 기타 가공용
5. 1107.10란 볶지 않은 것 맥주 제조용과 1107.20란 볶은 것 제1호 훈연(熏煙)한 것 맥주 제조용 및 제2호 기타 맥주 제조용
6. 1701.91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및 1701.99란 기타
7. 2207.10란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제1호 조주정(粗酒精)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 중 1214.90란 기타 제1호 사료용 뿌리채소류 및 제2호 기타 나목 기타 사료용과 2308.00란 사료용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waste),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 제4호 기타 사료용 물품의 한계수량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한계수량의 범위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수입신고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에 관한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6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3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제분용 밀 등 11개 품목은 그 적용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총 52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사료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트펄프, 목화씨껍질, 유(乳)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4개 품목의 적용세율을 2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한계수량을 60만 메트릭톤(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에서 80만 메트릭톤으로 하여 추가로 20만 메트릭톤을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관
장 현 오 석

●대통령령 제2464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